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기금의 도시계정 용도 추가》

■ 박용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162호)

2025.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박용갑의원 대표발의(제2210162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2
가. 주택도시기금의 도시계정 용도에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시행 비용 에 대한 출자·투자·용자’ 추가(안 제9조제2항제2호라목 신설)	2

I. 박용갑의원 대표발의(제2210162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용갑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5. 4. 28.

다. 회 부 일 : 2025. 4. 29.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대구, 광주, 대전, 부산, 울산 등에 산업과 주거, 문화 등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2020년 『도심융합특구 종합계획』을 발표함.

그러나 도시재생사업이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을 통해 사업에 대한 출자, 투자, 융자 등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달리 도심융합특구 사업은 주택도시기금 지원이 전무하고, 2021년 이후 4년간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50억 원 외에 별다른 지원이 없어 사업 시행자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이 매우 지지부진한 상황임.

이에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을 도시재생사업 산업단지재생사업처럼 도심융합특구 사업에 출자·투자·융자할 근거를 마련해 도심융합특구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2호라목 신설).

3. 검토의견

가. 주택도시기금의 도시계정 용도에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시행 비용에 대한 출자·투자·융자’ 추가(안 제9조제2항제2호라목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9조(기금의 용도) ① (생 략)	제9조(기금의 용도) ① (현행과 같 음)
② 기금의 도시계정은 다음 각 호 의 용도에 사용한다.	②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사업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출자·투 자 또는 융자	2. ----- -----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 <u>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 성에 관한 특별법</u> 」 제2조제 2호에 따른 <u>도심융합특구개 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 용</u>
2의2. ~ 6. (생 략)	2의2. ~ 6.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의 용도에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¹⁾에 따른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시

1)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심융합특구”란 지방 도시의 도심에 산업·주거·문화시설 등을 복합하여 조성하는 혁신공 간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행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출자·투자 또는 용자를 추가하려는 것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의 건설에 대한 출자 또는 용자 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주택계정'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용자 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도시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관리되는데, 이 중 '도시계정'은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빈집정비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자,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에 대한 용자,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출자·투자 또는 용자 등의 용도에 사용하고 있음(「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2항2)).

2.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이하 “특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 도심융합특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도심융합특구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산업·주거·문화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 나. 도심융합특구를 혁신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업무·교육·연구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 다. 도심융합특구의 기업 및 정주 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도로 건설사업, 전기·통신·가스·용수 등의 공급시설사업,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건설사업 및 공원조성사업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2)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기금의 용도) ① (생략)

② 기금의 도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다음 각 목에 대한 용자

-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
- 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

2. 다음 각 목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출자·투자 또는 용자

- 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재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토지의 매입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다)
 -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 2의2.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의 사업으로 조성된 부동산을 매입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목적으로 운영하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에 대한 출자·용자

도시재생사업(융자)은 쇠퇴하는 도심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기반 창출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공기업·도시재생리츠 등 사업시행자에게 융자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최근 5년간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에서 7,434억 4,600만원이 지원되었음.

【 도시재생사업(융자) 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	사업 내용	금액
2021	출·융자복합지원 2곳, 융자단독지원 2곳	101,929
2022	출·융자복합지원 2곳, 융자단독지원 5곳 등	150,062
2023	출·융자복합지원 4곳, 융자단독지원 4곳 등	230,090
2024	출·융자복합지원 3곳, 융자단독지원 4곳 등	156,365
2025	기승인 3곳, 신규 1곳 등	105,000
합 계		743,446

주) 2021년 ~ 2024년: 집행액 기준, 2025년: 계획액 기준

※ 자료: 국토교통부

3. 다음 각 목의 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융자

-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 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른 재정비촉진특별회계
-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도시재생특별회계
- 3의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창업지원, 지역상권 활성화 등 도시재생 관련 투자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 3의3. 제2호 각 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및 제2호의2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의 매입
4.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예수금, 예탁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6. 그 밖에 도시계정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한편, “도심융합특구”란 지방 도시의 도심에 산업·주거·문화시설 등을 복합하여 조성하는 혁신공간으로 2020년 9월 정부는 지방 대도시(광역시 5곳)에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³⁾하였음.

이후 정부는 2020년 12월 대구·광주를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로 선택한 것을 시작으로 대전, 부산, 울산 순으로 사업지구를 선정하였음.

또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을 위한 근거법을 마련하기 위해, 2021년 5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5건의 제정안이 발의되었고, 국토교통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2023년 10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2024. 4. 25. 시행)되었음.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이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을 통해 대규모 지원을 받는 것과 달리 최근 5년간 도심융합특구사업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65억원만 지원받고 있어 사업시행자 선정이 지연되는 등 사업이 매우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는 의견이 있음(제안이유 참조).

3)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판교2밸리 지방에도 만든다. 지방 대도시에 산업·주거·문화 복합인프라 갖춘 도심융합특구 조성 추진”, 2020. 9. 23.

【 도심융합특구지원 사업비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도심융합특구지원 (6031-319)	1,500	2,500	500	500	1,500	6,500

주) 2021년 ~ 2024년: 집행액 기준, 2025년: 예산액 기준

※ 자료: 국토교통부

이에, 개정안은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출자·투자 또는 용자에 주택도시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심융합특구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그런데, 개정안은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먼저,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2024년 4월 시행된 이후 정부는 2024년 10월 5개 광역시를 도심융합특구로 지정하고 11월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을 승인하였으며, 2025년 4월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시작하였음.

【 지역별 도심융합특구 지정 현황 】

구분	면적	위치	핵심 산업
부산	191만㎡	센텀2 도시첨단산업단지	스마트선박, 로봇, 지능형기계
대구	98만㎡	경북도청 후적지, 경북대 등	로봇, UAM, 반도체
광주	85만㎡	시청인근 상무지구 서측	인공지능, 모빌리티, 의료
대전	134만㎡	KTX대전역, 충남도청 후적지	첨단지식산업, UAM, 문화
울산	192만㎡	KTX울산역, 테크노파크	모빌리티, 이차전지, 수소

※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도심융합특구’ 지정’, 2024. 11. 7. 참조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다소 지연되어 2025년까지 비교적 적은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2025년 말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면 향후 정부의 지원⁴⁾도 커질 것으로 생각됨.

다음으로, 개정안이 「주택도시기금법」의 목적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임.

「주택도시기금법」의 목적⁵⁾은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도시계정은 도

4)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 착수”, 2025. 4. 22.

- 이번엔 최초로 수립하는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에는 「도심융합특구법」에서 정한 도심융합특구의 기본 목표, 중장기 발전전략, 특구의 조성·육성에 관한 사항, 운영현황 및 성과의 확산에 관한 사항 등이 담길 예정이다.
- 추가적으로 △기획발전특구 등과 연계한 범부처 지원방안, △선도기업 유치전략, △산업 네트워크 연결 방안, △세계감면, 주거지원 등 기업·종사자 지원방안 구체화, △정부 재정지원 필요성 및 세부기준, △정부·지자체·민간 등 거버넌스 체계 정립 등도 포함할 계획이다.

5) 「주택도시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하여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⁶⁾”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함.

도심융합특구사업은 5개 광역시 도심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쇠퇴하는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재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적은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다음의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

첫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⁷⁾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⁸⁾”을 살펴보면, 도시재생의 추진전략⁹⁾으로 ‘인구감소 시대 기성시가지 중심의 도시관리정책으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5년마다 그 내용을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

8) 국토교통부, “제2차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2024. 1.

9) 도시재생의 추진전략: ① 인구감소 시대 기성시가지 중심의 도시관리정책으로 전환, ② 지역·주민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추진, ③ 부처간 협업을 통해 재생이 시급한 지역에 집중 지원, ④ 지역별 맞춤형 특례, 재정·금융지원 등 복합적 정책수단 활용, ⑤ 시혜적 복지가 아닌 자생적 활성화 지원(※자료: 제2차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p.6~p.7)

로 전환'이 있음.

이는 인구감소에 대응하여 도시 외곽에 무분별한 신시가지 개발을 지양하고 도심의 쇠퇴와 공동화를 사전에 예방하는 다양한 정책이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관리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을 뜻함.

또한, 이를 위해 국가는 기성시가지 위주로 도시·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이용수요가 높은 도심지에 대해서는 중심업무·주거·상업·첨단산업 기능 등 복합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며, 공동화가 일어나는 원도심의 상업·업무 기능을 재편하는 등의 도시재생 시책을 시행¹⁰⁾하여야 함.

그런데, 도심융합특구사업 선정지역인 대구 북구 경북도청 후적지¹¹⁾, 대전 동구 KTX대전역 및 대전 중구 충남도청 후적지¹²⁾, 울산 중구 다운혁신융합지구¹³⁾(테크노파크)는 원도심으로 분류될 수 있음.

10) 국토교통부, “제2차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2024. 1. p.10~p.14 참조

11) 영남일보, “대구시청과 옛 경북도청 후적지 개발 임박... 도심 공간구조 달라지나?”, 2022. 2. 16.
- 행정의 중심축 역할을 했던 대구시청과 옛 경북도청 후적지 개발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대구 시청사와 옛 경북도청은 전통의 도심 행정타운이었다.

12) 대전광역시 누리집 - 대전소개 - 온라인 홍보관 - Story대전 - “옛 충남도청사와 원도심 이야기”
- 협회의 원도심은 과거 대전의 행정과 상업 중심지였던 대전역에서 옛 충남도청사 구간 일대입니다.

13) 울산광역시 보도자료, “울산 도심융합특구 지정 및 기본계획 승인”, 2024. 11. 8.
- 다운혁신융합지구(30만㎡)는 우정혁신도시 및 울산테크노파크와 연계해 원도심에 혁신산업 융합지구(클러스터)를 구축한다.

또한, 광주 서구 상무지구는 광주광역시 청사가 이전한 2004년 이후 광주의 행정·경제 중심지로 거듭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청사 이전 후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신도심이 원도심으로 바뀌고 상권 위축, 인구 유출 등으로 성장세가 정체 상태라는 의견¹⁴⁾도 있음.

즉, 도심공동화를 막기 위한 원도심의 활성화가 도시재생의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데, 대구·대전·광주·울산의 도심융합특구사업은 이에 해당될 수 있음.

둘째, 한국고용정보원의 연구¹⁵⁾에 따르면 지방소멸 위험은 광역대도시도 예외가 아니며, 광역시의 소멸위험 지역¹⁶⁾들은 재개발이 지연된 원도심(부산 영도구·동구, 대구 서구, 대전 중구 등)과 노후산업지역(부산 사상구·사하구, 대구 서구 등)뿐만 아니라 부산 해운대구와 같은 신도심으로 확산되고 있음.

특히, 2024년 3월 기준으로 부산 해운대구를 살펴보면, 반송1동·반송2동은 각각 소멸위험지수 값이 0.192와 0.194로 소멸고위험지역에 해당하며, 반여2동·3동 역시 소멸위험지수 값이 각각 0.218과 0.269로 소멸고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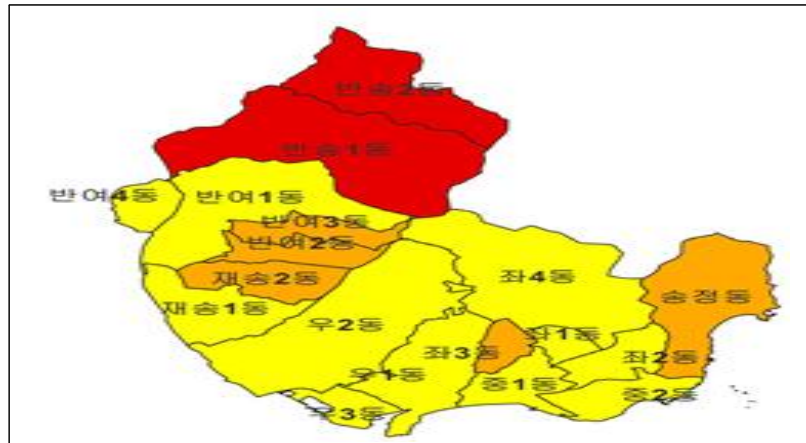
14) 광주일보, “광주시청 ‘상무시대’ 20년... 도심융합특구 변화 모색”, 2024. 5. 6.

15) 한국고용정보원, 지역산업과 고용 2024년 여름호, “지방소멸 2024: 광역대도시로 확산하는 소멸위험”, 2024. 6.

16) 소멸위험지역은 소멸위험지수(20~39세 여성 인구수를 6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눈 값)을 통해 측정되며, 소멸위험지수 값이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진입단계, 0.2 미만이면 소멸고위험단계로 구분됨.(※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지역산업과 고용 2024년 여름호, “지방소멸 2024: 광역대도시로 확산하는 소멸위험”, 2024. 6. p.126)

지역 기준에 근접하고 있음.

【 부산 해운대구 동별 소멸위험지수 현황 】



주1) 2024. 3. 및 행정동 기준

주2) 붉은색 표시는 소멸고위험단계, 주황색 표시는 소멸위험진입단계, 노란색 표시는 소멸위험지수 값이 0.5 이상인 지역을 뜻함.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지역산업과 고용 2024년 여름호, “지방소멸 2024: 광역대도시로 확산하는 소멸위험”, 2024. 6. p.131 참조

부산 도심융합특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¹⁷⁾에 따르면, 부산 도심융합특구의 위치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 일원으로 반송동 일부가 포함¹⁸⁾되어 있음.

즉, 부산 도심융합특구의 일부와 그 배후지가 소멸고위험지역이므로 부산 도심융합특구사업은 인구의 감소로 쇠퇴하는 도시를 활성화시키

1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89호, 「부산 도심융합특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024. 11. 7.

1. 도심융합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부산 도심융합특구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 468 일원 (반여동, 반송동, 석대동 일원)

다. 면 적 : 1,912,440㎡

18) 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 부산 도심융합특구의 위치를 행정동으로 보면, 반여동은 반여1동에 해당되고, 반송동과 석대동은 반송1동에 해당됨.

는 도시재생의 하나로 볼 수 있음.

따라서, 도심융합특구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에 포함될 수 있고, 개정안은 「주택도시기금법」의 목적에 부합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됨.

마지막으로,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주택도시기금의 수입은 주로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과 같은 차입금으로 구성되는데,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은 청약저축 해지를 대비하고 국민주택채권을 상환해야 하는 지급 준비금 성격을 지님.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은 2022년도 28조 7,225억원에서 2024년도 말 기준 10조 1,022억원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는바,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개정안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균형점 마련을 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최근 3년간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현황 】

(단위: 억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여유자금	287,225	192,513	101,022

※ 자료: 국토교통부

따라서, 개정안은 ① 도심융합특구사업의 활성화 필요성, ② 개정안과 「주택도시기금법」의 목적이 부합되는 측면이 있는 점, ③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지방 주요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재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¹⁹⁾은 실시계획 수립 전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검토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향후 사업이 구체화 되면 주거복지 증진, 도시재생 활성화 등 주택도시기금운용 취지²⁰⁾를 감안하여 도심융합특구 내 도시재생을 위한 지원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므로, 개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590

19)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이하 “특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 도심융합특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20) 「주택도시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하여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

도심융합특구 사업개요

※ 자료: 국토교통부

□ 개념

- 지방 주요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공간을 구축하여 기업투자·성장과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광역 성장거점



- (기존사업과 차별성) 성장기반을 갖춘 주요도시 도심을 대상, 공간조성(H/W)과 기업지원(S/W)을 융합, 규제완화·인센티브 등 특례 제공

□ 주요 내용 (국토부 플랫폼 조성 + 범부처 기업·청년 지원 프로그램)

- (공간개발) 기업 지원공간과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문화·주거·상업 시설을 도심에 종합 제공(입지규제를 완화하여 고밀·복합개발)
- (기업·청년지원) 각 부처의 기업·대학·산업 지원 프로그램을 종합 제공*하고, 타 특구 중복지정 및 입주기업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
 - * (중기부) 중소벤처기업 지원 (산업부) 특화산업 육성지원 (과기부) R&D 중심 지원
- (지원체계) 범부처 협업을 통해 특구를 지원하고, 지역 내 전담기관도 설립하여 지속적·체계적 운영(특구진흥재단, 기업종합지원센터)

□ 추진 현황

- (특별법 제정) 「도심융합특구법」 제정('23. 10. 24. 공포), '24. 4. 25. 시행
- (선도사업)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광역시에 도심융합특구 지정 및 기본계획 승인('24. 11.)
- (R&D) 기업·연구기관들의 참여를 통해 도심융합특구 내 혁신산업 실증·구현을 지원하는 R&D 추진('23~'29년, 국비 280억원)